힐스테이트 중외공원 2블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1.26.**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2023.01.26.** 이전부터 계속 거주)**우선**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2018.12.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형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O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illstate-park.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

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시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신고 거부, 서류미비, 미제출한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선정일로부터 6개월	입주자선정일로부터 6개월

※ 전매제한 사항은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착오에 의한 청약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부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의 경우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6개월, 위축지역의 경우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사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택법」제65조 제5항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제1항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사실이 적발된 자는 그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 체결
		1순위	2순위			
일정	2월 5일(월)	2월 6일(화)	2월 7일(수)	2월 15일(목)	2월 20일(화) ~ 2월 24일(토)	2월 27일(화) ~ 2월 29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제출 (10:00 ~ 16:00)	견본주택 방문계약 (10:00 ~ 16:00)
장소	■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방문접수 - 당첨자 서류검수 필수 ■ 구비서류안내 -청약신청유형별 구비서류 지참	■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67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은행 영업점별 업

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1/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재금액을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함.
- 「국세기본법」제47조의 4항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중 인지세법 제8조에 따른 문서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과-**3144호(2024.01.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131-1번지 일원(중외근린공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2~26층 8개동 총 7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89세대(일반[기관추천] 52세대, 다자녀가구 75세대, 신혼부부 94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47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주택	2024000028	01	84.7008A	84A	84.7008	24.1783	108.8791	53.3321	162.2112	52.6435	116	11	11	20	3	10	55	61	3
		02	84.2784B	84B	84.2784	23.6540	107.9324	53.0662	160.9986	52.3810	270	27	27	48	8	24	134	136	9
		03	84.7008C	84C (테라스)	84.7008	24.1783	108.8791	53.3321	162.2112	52.6435	2	-	-	-	-	-	-	2	-
		04	84.2784D	84D (테라스)	84.2784	23.6540	107.9324	53.0662	160.9986	52.3810	2	-	-	-	-	-	-	2	-
		05	84.9353E	84E	84.9353	25.1832	110.1185	53.4798	163.5983	52.7892	146	14	14	26	4	13	71	75	6
		06	102.6877A	102A (테라스)	102.6877	28.1163	130.8040	64.6577	195.4617	63.8228	2	-	-	-	-	-	-	2	-
		07	102.2521B	102B (테라스)	102.2521	27.6508	129.9029	64.3834	194.2863	63.5520	2	-	-	-	-	-	-	2	-
		08	112.9399A	112A	112.9399	31.8878	144.8277	71.1130	215.9407	70.1948	119	-	11	-	3	-	14	105	5
		09	112.8233B	112B	112.8233	30.7891	143.6124	71.0396	214.6520	70.1223	122	-	12	-	3	-	15	107	5
		10	157.5913A	157A (테라스)	157.5913	44.5573	202.1486	99.2280	301.3766	97.9467	2	-	-	-	-	-	-	2	-
		11	157.1557B	157B (테라스)	157.1557	44.0919	201.2476	98.9537	300.2013	97.6759	2	-	-	-	-	-	-	2	-
	합 계										785	52	75	94	21	47	289	496	28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84.7008A	84.2784B	84.7008C	84.2784D	84.9353E	102.6877A	102.2521B	112.9399A	112.8233B	157.5913A	157.1557B
약식표기 주택형	84A	84B	84C(테라스)	84D(테라스)	84E	102A(테라스)	102B(테라스)	112A	112B	157A(테라스)	157B(테라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층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4.10.15	2025.02.15	2025.06.15	2025.10.15	2026.02.15	2026.07.15	입주지정일
84A	116	1층	1	194,779,000	356,221,000		551,000,000	10,000,000	4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65,300,000
		2층	3	201,495,000	368,505,000		570,000,000	10,000,000	4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3층	3	207,858,000	380,142,000		588,000,000	10,000,000	4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176,400,000
		4-5층	10	212,100,000	387,900,000		600,000,000	10,000,000	5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6-15층	50	216,342,000	395,658,000		612,000,000	10,000,000	5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16층 이상	49	218,817,000	400,183,000		619,000,000	10,000,000	5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84B	270	1층	4	194,779,000	356,221,000		551,000,000	10,000,000	4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65,300,000
		2층	8	201,495,000	368,505,000		570,000,000	10,000,000	4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3층	9	207,858,000	380,142,000		588,000,000	10,000,000	4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176,400,000
		4-5층	22	212,100,000	387,900,000		600,000,000	10,000,000	5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6-15층	110	216,342,000	395,658,000		612,000,000	10,000,000	5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16층 이상	117	218,817,000	400,183,000		619,000,000	10,000,000	5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84C (테라스)	2	3층	2	249,571,000	456,429,000		706,000,000	10,000,000	6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211,800,000
84D (테라스)	2	3층	2	249,571,000	456,429,000		706,000,000	10,000,000	6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211,800,000
84E	146	1층	2	194,779,000	356,221,000		551,000,000	10,000,000	4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65,300,000
		2층	5	201,495,000	368,505,000		570,000,000	10,000,000	4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3층	6	207,858,000	380,142,000		588,000,000	10,000,000	4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176,400,000
		4-5층	12	212,100,000	387,900,000		600,000,000	10,000,000	5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6-15층	60	216,342,000	395,658,000		612,000,000	10,000,000	5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16층 이상	61	218,817,000	400,183,000		619,000,000	10,000,000	5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102A (테라스)	2	2층	2	307,545,800	511,322,000	51,132,200	870,000,000	10,000,000	7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261,000,000
102B (테라스)	2	2층	2	307,545,800	511,322,000	51,132,200	870,000,000	10,000,000	7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87,000,000	261,000,000
112A	119	1층	1	274,669,600	456,664,000	45,666,400	777,000,000	10,000,000	6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33,100,000
		2층	5	283,860,500	471,945,000	47,194,500	803,000,000	10,000,000	7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240,900,000
		3층	5	293,052,500	487,225,000	48,722,500	829,000,000	10,000,000	7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248,700,000
		4-5층	10	299,061,300	497,217,000	49,721,700	846,000,000	10,000,000	7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253,800,000
		6-15층	50	305,424,400	507,796,000	50,779,600	864,000,000	10,000,000	7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259,200,000
		16층 이상	48	308,252,200	512,498,000	51,249,800	872,000,000	10,000,000	7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261,600,000
112B	122	1층	1	274,669,600	456,664,000	45,666,400	777,000,000	10,000,000	6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33,100,000
		2층	5	283,860,500	471,945,000	47,194,500	803,000,000	10,000,000	7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80,300,000	240,900,000
		3층	5	293,052,500	487,225,000	48,722,500	829,000,000	10,000,000	7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82,900,000	248,700,000
		4-5층	10	299,061,300	497,217,000	49,721,700	846,000,000	10,000,000	7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253,800,000
		6-15층	50	305,424,400	507,796,000	50,779,600	864,000,000	10,000,000	7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259,200,000
		16층 이상	51	308,252,200	512,498,000	51,249,800	872,000,000	10,000,000	7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261,600,000
157A (테라스)	2	1층	2	460,258,000	765,220,000	76,522,000	1,302,000,000	10,000,000	120,2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390,600,000
157B (테라스)	2	1층	2	460,258,000	765,220,000	76,522,000	1,302,000,000	10,000,000	120,2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130,200,000	390,600,0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형 중 85㎡ 초과 타입의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의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당시 공급가격에 따라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테라스)	84D (테라스)	84E	102A (테라스)	102B (테라스)	112A	112B	157A (테라스)	157B (테라스)	합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6	-	-	3	-	-	-	-	-	-	12
	장기복무 제대군인		2	5	-	-	3	-	-	-	-	-	-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5	-	-	2	-	-	-	-	-	-	9
	중소기업 근로자		2	5	-	-	3	-	-	-	-	-	-	10
	장애인	광주광역시	1	3	-	-	2	-	-	-	-	-	-	6
		전라남도	1	3	-	-	1	-	-	-	-	-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	27	-	-	14	-	-	11	12	-	-	75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48	-	-	26	-	-	-	-	-	-	9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8	-	-	4	-	-	3	3	-	-	21
생애최초 특별공급			10	24	-	-	13	-	-	-	-	-	-	47
합 계			55	134	-	-	71	-	-	14	15	-	-	28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주택공급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 등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라남도)</th><th>그 밖의 광역시
(광주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r>
<tr><td>모든 면적</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td></tr>
</tabl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5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024.01.26.(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장애인 :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전라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광주지방보훈청 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배우자의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광주광역시 1년 미만 및 전라남도)보다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 4명	35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주택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광주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9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1.26.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1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7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1.26.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전용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인 자는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초과 85㎡이하	▪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전라남도)	그 밖의 광역시(광주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②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총족하는 분은 민영·국민주택의 모든 공급유형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청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 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2.05.(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67**
일반공급	1순위	2024.02.06.(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접수시간 : 09:00~16:00)
	2순위	2024.02.07.(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람.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금융인증서 등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람.(유효한 금융인증서 등을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 발급하시기 바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음.
-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 관련" 현재 거주지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위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자산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 내역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제1항제2호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여부 판단 시 아래의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 접수 불가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등재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단, 상기 5개년도 서류 중 전년도 소득 증빙 자료는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청약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등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표1]**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 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세무서 - 국민연금 관리공단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재무재표	- 세무서 - 해당 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세무서 -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 직장
무직자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세무서 - 접수장소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표2]**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③ 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①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③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원(*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단독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행정복지센터 -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화면을 인쇄하여 제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 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 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음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 기록여부 "Y"
		○		세대원	▪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등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 기록여부 "Y"
		○		피부양 직계비속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 기록여부 "Y"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유의 사항 등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청약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민영주택)]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시간(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주택공급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제57조제8항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Ⅵ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4.02.15.(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4.02.20.**(화)~**2024.02.24.**(토) (10:00~16:00) • 장소 -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견본주택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67)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 2순위 당첨자 : 일반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4.02.27.**(화)~**2024.02.29.**(목) (10:00~16:00) • 장소 -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견본주택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67)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 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hillstate-park.com)또는 스마트폰앱(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2.15.**(목) ~ **2024.02.24.**(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4.02.1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Ⅶ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4.02.27.(화) ~ 2024.02.29.(목)** **(3일간, 10:00 ~ 16:00)**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67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O		자격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O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O		계약금 입금 영수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 견본주택 현금 수납 불가
	O		전자수입인지		인지세법에 의거한 전자수입인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O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외 모두)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참조)
①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②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광주은행	1107-021-649952	㈜한국토지신탁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201동 2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20102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 (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를 제외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 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나 대출기관의 내부 규정 등으로 인해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정책·관계법령 대출상품의 종류·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를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중도금 무이자 조건은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세대 등 중도금 무이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 지원이 없으며, 이를 요구할 수 없음.(중도금 대출을 입주 개시 전에 중도 상환한 경우 별도의 이자 지원을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알선은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60일 이상의 입주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주민카페 등)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알선자도 포함) 및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 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4.10.15	입주지정일
84A	38,500,000	3,850,000	7,700,000	26,950,000
84B	38,500,000	3,850,000	7,700,000	26,950,000
84C(테라스)	38,500,000	3,850,000	7,700,000	26,950,000
84D(테라스)	38,500,000	3,850,000	7,700,000	26,950,000
84E	38,500,000	3,850,000	7,700,000	26,950,000
102A(테라스)	45,650,000	4,565,000	9,130,000	31,955,000
102B(테라스)	45,650,000	4,565,000	9,130,000	31,955,000
112A	49,500,000	4,950,000	9,900,000	34,650,000
112B	49,500,000	4,950,000	9,900,000	34,650,000
157A(테라스)	49,500,000	4,950,000	9,900,000	34,650,000
157B(테라스)	49,500,000	4,950,000	9,900,000	34,650,000

(2)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광주은행	1107-021-650024	㈜한국토지신탁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 각 회차별 납부대금은 납부기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 (광주은행 모계좌 ㈜한국토지신탁)으로 관리됩니다.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201동 2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최초 발코니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일부)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기존 시공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다용도실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제외)로 산정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는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과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고, 제공품목의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내부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 선택시 일부 추가선택품목(옵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 측벽 / 세대간벽의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환기 부주의로 인한 결로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박스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세대분전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옵션 미적용 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공 범위 외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시행위탁자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계약자는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 등 관련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 배관공사 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서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련 법령상 발코니가 하향식 피난구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안내(발코니 비확장 시 일부 품목 선택 불가)

(1) 무상옵션

약식표기	옵션명	위치	내용	선택1	선택2
전 주택형	거실/주방 바닥 마감	거실/주방 바닥	바닥 마감재 선택	강마루	포세린타일
84A, 84C(테라스), 102A(테라스), 112A(테라스), 157A(테라스)	드레스룸 통합형/분리형	침실1 드레스룸	드레스룸 및 파우더룸 공간 형태	드레스룸 분리형 (드레스룸+파우더공간 분리)	드레스룸 통합형 (드레스룸 확장 – 파우더공간 통합)

(2)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 표기	위치	총수량		옵션	공기청정기능 無	옵션	공기청정기능 추가	비고
		실내기	실외기		공급금액		공급금액	
84 A/B/E C(테라스) D(테라스)	거실+주방+침실1	3대	1대	선택1	6,050,000	선택2	6,49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1대	선택3	8,800,000	선택4	9,570,000	
102A/B (테라스)	거실+주방+침실1	3대	1대	선택1	6,380,000	선택2	6,82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1대	선택3	9,130,000	선택4	9,90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대	1대	선택5	10,450,000	선택6	11,440,000	주방고급화③ 선택시 선택불가
112A/B	거실+주방+침실1	3대	1대	선택1	6,710,000	선택2	7,15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1대	선택3	9,460,000	선택4	10,23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대	1대	선택5	10,780,000	선택6	11,770,000	주방고급화③ 선택시 선택불가
157A/B (테라스)	거실+주방+침실1	3대	1대	선택1	7,150,000	선택2	7,59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대	1대	선택3	10,230,000	선택4	11,000,00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대	1대	선택5	11,550,000	선택6	12,430,000	주방고급화③ 선택시 선택불가
	스튜디오	1대	1대	선택7	2,530,000	선택8	2,75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공기청정기능 유무와 상관없이 실내기의 모델명이 동일하며, 공기청정기능이 없는 경우 기본형 판넬이 설치되고 공기청정기능 추가시에는 공기청정형 판넬이 부착되어 설치됩니다.
※ 157타입 스튜디오는 싱글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시스템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거실/침실1)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 및 침실1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에어컨이 옵션에 따라 제공되며, 설치 위치 및 제품의 디자인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 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157A, 157B 타입의 스튜디오는 별도의 개별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 타입)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장비의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결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내 실외기 설치 공간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 이로 인해 실외기 설치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제품의 품귀, 품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급,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컨트롤러(리모컨)는 무선이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쿨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주택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추후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종 홍보물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거실, 주방, 침실1, 2, 3, 4, 알파룸, 스튜디오 등)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공간 및 발코니에 응축수 드레인 및 냉매배관 또는 관통 슬리브가 노출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4) 추가선택사항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옵션명		내용		84A	84B	84C (테라스)	84D (테라스)	84E	102A (테라스)	102B (테라스)	112A	112B	157A (테라스)	157B (테라스)
마감 특화	스위치 조명 고급화	AI음성인식제어 스위치 - 거실간접조명 추가 및 거실 등 디자인 변경, - 거실/주방/식탁 및 침실조명 색온도 및 조도 조절 기능 추가 ※ 거실간접등, 주방아일랜드 조명 조도 및 색온도 조절 기능 제외		4,620,000	4,620,000	4,620,000	4,620,000	4,840,000	5,280,000	5,280,000	5,610,000	5,610,000	6,600,000	6,600,000
	현관 고급화	선택1	현관 중문_3연동 슬라이딩 도어(수동)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선택2	현관 중문_3연동 슬라이딩 도어(자동)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선택3	7인치 월패드 *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및 기기제어, 문열림, 현관앞 택배확인, 간편 음성제어 기능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550,000
	주방 고급화	선택1	주방 벽면 고급화 - 주방 벽 국산타일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 업그레이드	1,210,000	1,430,000	1,210,000	1,430,000	1,430,000	1,320,000	1,540,000	1,540,000	1,760,000	1,320,000	1,540,000
		선택2	주방 가구 디자인 변경 등 업그레이드 - 주방 벽, 상판 세라믹타일 마감 - 주방 상부장 가구 디자인 유리 플랩장(조명) - 사각씽크볼/디자인수전(LIDDEL)/전해수살균수전(세비앙) - 아일랜드 콘센트 추가 - 주방 천장 라인조명/주방 단천장(판상형만 적용) - 주방 장식장 디자인 유리장식장 변경(112A/B제외)	11,220,000	11,440,000	11,220,000	11,440,000	11,330,000	13,530,000	13,640,000	8,910,000	9,020,000	13,640,000	13,750,000
		선택3	디럭스 주방 주방고급화 선택2(세라믹타일 마감 기준) 선택시 가능 (112A/B) 주방다이닝공간 확대 + 펜트리 수납추가 + 알파룸 슬라이딩도어 추가 (102A/B, 157A/B) 주방공간확대, 독립형 아일랜드식탁 (알파룸 삭제)						2,090,000	2,090,000	3,630,000	3,630,000	2,090,000	2,090,000
	욕실 고급화 (욕실1/욕실2)	욕실 마감 및 디자인 고급화 - 젠다이, 젠다이하부, 욕조측판 등 엔지니어드스톤 - 욕실1 세면대 : 외산 반다리 일체형(아메리칸 스탠다드) - 욕실2 세면대 : 외산 카운터형(아메리칸 스탠다드) - 비데일체형 양변기(아메리칸 스탠다드) - 디자인 수전(LIDDEL) - 스마트샤워기 캔버스H(세비앙_부부욕실) - 풀 파티션 특화디자인 샤워부스(부부욕실) - 욕실장 하부조명 - 고급형 휴지걸이/수건걸이/공용욕실_수건선반(LIDDEL) - 스마트 욕실 환풍기(힘펠)		6,160,000	6,160,000	6,160,000	6,160,000	6,270,000	5,940,000	5,940,000	6,600,000	6,710,000	8,910,000	8,910,000
가구 특화	키큰장 수납형	냉장고장 + 수납장 - F/S김치냉장고장 → 디바이더 대서랍 + 가구 도어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2,090,000
	침실3 반침장	침실3 붙박이장 추가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복도수납장	복도 수납장 변경 - 침실2 워크인장 → 침실2 붙박이장 + 복도 펜트리 추가						1,540,000						
가전 특화	쿡탑	삼성 3구 인덕션(NZ63B5056CB)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1,320,000
	전기오븐	삼성 빌트인 전기오븐(NQ36A6555CK)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빌트인 식기세척기(DW60T7065SS)		1,210,000	1,210,000	1,210,000	1,210,000	1,210,000	1,210,000	1,210,000	1,210,000		1,210,000	1,210,000
	제습기	드레스룸 빌트인 제습기(힘펠) * 112㎡A 타입의 경우 2개소 설치		1,540,000	1,540,000	1,540,000	1,540,000	1,540,000	1,540,000	1,540,000	3,080,000	1,540,000	1,540,000	1,540,000
	비스포크 + 키큰장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RR40C7995AP/ RR40C7895AP) 삼성 비스포크 냉동고(RZ34C7965AP/ RZ34C7865AP) 삼성 비스포크 김치냉장고(RZ34C7965AP/ RZ34C7865AP) 측면 오픈장형 키큰장(112B타입 경우 오픈장 미적용)		6,930,000	6,930,000	6,930,000	6,930,000	6,710,000	6,930,000	6,930,000	6,710,000	6,160,000	6,930,000	6,930,000

(5)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금액) 및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선택품목 공사비 계약금	광주은행	1107-021-650024	㈜한국토지신탁	계약 시	**2024.10.15**	입주지정일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선택품목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추가선택품목 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추가선택품목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 추가선택품목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4.02.27**.(화)~**2024.02.29**.(목)]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 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철근콘크리트 공사 착수시점 등)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2개의 드레스룸이 설치되는 112㎡A 등 유닛에 1개의 제습기만 연동 배기가 가능하고, 나머지 제습기는 연동 배기가 불가합니다.
- 가전특화 중 인덕션 선택 시 가스 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가스배관 등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비용이 적용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가스계량기 위치: 다용도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Ⅸ 단지 여건 및 설계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이는 전체 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공원조성 사업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공원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광주 중외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주체는 공원 및 비공원시설(공동주택)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을 시행하며, 공동주택 부지 외 조성사업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를 포함한 공원 및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급물건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2블록과 3블록은 입주 시 단지별로 관리주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별로 발생하는 관리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개발계획 및 단지외부여건	• 당 사업과 공원조성사업외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 혹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기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단지와 관련한 각종평가(소음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해당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소음영향평가결과에 따라 2블록 남측 30m 도로에 면한 구간에는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방음벽의 높이는 소음평가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방음벽 기초의 구조계산에 따라 설치 위치는 일부 조정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은 민원의 사항이 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단지 내 우·오수처리계획,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 옹벽 등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공원부지 우·오수처리계획은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필요 시 비공원시설 부지 내를 통과하여 외부로 연결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힐스테이트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단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접대지, 도로, 근린공원, 보전녹지, 기타시설 등은 현재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해당관청의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주변 인접대지, 공원 등이 계획됨에 따라 전면 조망 및 생활권의 일부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남측 : 폭 30m, 북측 : 폭 15m, 서측 : 폭 20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도로에 인접한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매연, 현휘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보행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단지와 인접한 공원시설 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외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및 계단 등의 설치 위치, 높이, 벽체두께, 형상,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위에 설치된 옹벽은 주변 레벨에 따라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목옹벽에는 별도 건축마감이 시공되지 않음 • 기부채납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소음을 재측정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할 시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타입별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목업세대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 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조명 수량 및 위치, 배선기구 위치, 스위치 사양,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해야함.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및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포함 일부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 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드레스룸 옵션선택시 도배 및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붙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 시공되지 않음. -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화장실 등 타일이 시공되는 부위의 타일 줄눈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 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인접세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함. 또한, 천장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및 지상1~2층 필로티 상부층 세대, 테라스타입[84C(테라스), 84D(테라스)]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 테라스타입 중 102A(테라스),102B(테라스),157A(테라스),157B(테라스) 4개 타입은 하향식 피난구 및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음 • 테라스가 계획되어 있는 타입[84C(테라스), 84D(테라스), 102A(테라스), 102B(테라스), 157A(테라스), 157B(테라스)]의 테라스 공간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하부층 지붕공간으로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변경은 불가하며 임의 변경 시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하며, 각 테라스는 연접한 해당세대가 활용 가능하나, 하부세대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개방을 요구한 경우 개방해주어야 하며, 소유권을 요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음. • 테라스가 계획되어 있는 세대는 해당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여야 함. •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타입별 평면에 따라 규모는 상이함. • 테라스가 계획되어 있는 세대의 거실 및 침실 등에서 테라스로 진·출입 시 골조 턱이 존재함 • 하부층이 지상1~2층 필로티일 경우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함. • 발코니 동체감지기는 최저층 2개층에 한하여 설치됨. • 하이오티(기본) / AI음성인식 스위치(유상)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하이오티(기본) / AI음성인식 스위치(유상)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하이오티(기본) / AI음성인식 스위치(유상)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Hi-oT 서비스와 제휴된 IoT 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 및 무선 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음.) • 하이오티(기본) / AI음성인식 스위치(유상)은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스마트폰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함.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주차 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동 1층 필로티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 방법 특별 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통신 단자함 설치 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처리 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므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202동, 203동, 206동, 207동, 208동의 1층 세대는 통합형 동출입구 계획에 따라 일부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57A(테라스), 157B(테라스)타입은 상부층(1층) 및 하부층(지하)에 위치하며 하부층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 내 계단을 통해 연결되며 해당 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별도 출입은 불가능함 • 157A(테라스), 157B(테라스)타입 썬큰 및 테라스에는 건축 기본마감으로 시공됨 • 84B, 112B, 84D(테라스), 102B(테라스), 157B(테라스) 타입은 한 동내 채광부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주방창호는 채광창이 아닌 창호로 계획되어 W800XH600 크기의 창호로 설치됨 • 201동 2호라인 112B타입 4층에서 22층에는 침실1 전면 발코니 일부가 오픈형 발코니로 계획되어 있으며 오픈형 발코니에는 외창이 설치되지 않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난방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주방 하부장 등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으로 인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텐박스 깊이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 등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후드 상부장 및 후드 내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거나 후드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시공 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으로 유상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과 제품 메이커, 사양, 사이즈는 변경되오니 옵션 계약 시 확인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에어컨용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과 침실1(벽걸이형)에 매립 설치되며, 기타 침실에는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고 배관 간격은 침실과 다르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됨. (욕실 난방 제외 구간 : 욕조 하부, 샤워실) • 욕실 배수배관이 층하배관 시스템이므로 인접세대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욕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배수를 위한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우배수 이중관 등) 및 바닥 드레인은 천정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되며, 별도의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않아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용도실과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함.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1~3층)는 세탁기 설치 예정위치에 저층배관 통기를 위한 발코니 입상배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관계법령 준수로 인한 배관 및 스프링클러 헤드가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상부에 상부세대의 설비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는 다용도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본 시공 시 설치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인덕션 옵션 선택 시, 마감성을 위해 가스 배관은 미제공될 예정이며, 가스배관 등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비용이 반영되어 옵션 금액으로 정산됨.

	• 세대 환기설비가 실외기실 천장 상부에 노출로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을 겸하고 있어 전열교환기가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설치 될 예정임.)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 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 할 수 있음. • 각 세대 실외기실 내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피난사다리의 사양은 마감 및 시공성 고려하여 설치 됨. • 세대 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설치로 인해 세대별 외벽에 주방/욕실 배기구가 설치되며, 배기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돕기위한 견본주택의 가시설물로, 실시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 법규에 의해 시공될 예정.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해당 관청과 협의과정 결과에 따라 3층~10층 대피공간(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학교관련	• 본 사업지의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는 관할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함. • 본 주택의 입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인근학교(하백초)'에 배치 예정이며, 중학생은 5학교군 배정 가능하나 추후 관할교육청의 학교배치관련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84A, 84E, 112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 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 및 영상장비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져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난간포함),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견본주택용이며, 실 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 예정임.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에 표현된 중외근린공원 조성계획 사항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후 인허가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단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1/2 공동 부담으로 계약서 작성시 납부하여야 함.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 공용조명(경관조명 등), 조형물, 항공장애등,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외부 놀이터 및 운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시설물 및 이용자, 차량에 의한 각종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인접 동, 인접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남측 및 서측에 지하1층~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지하층에 해당하나 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레벨임. 남측 30m도로변에 계획된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와의 레벨차에 따라 보도에서 계단 및 경사로를 통해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동주택(아파트)와는 무관하게 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남측의 주출입구는 지하2층으로 주차장으로 진입 가능한 레벨이며, 이에 따라 보행자는 셔틀용 승강기 및 계단을 통해 단지내로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201, 202, 203, 206, 207, 208동 동출입구는 2개 코아 통합형 동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6개동에는 지하2층까지 썬큰이 계획되어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남측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외관디자인 내부 마감계획 및 시설물/기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지반레벨에서는 별도의 승강기 또는 외부계단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지하1층 주차장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레벨차, 도로 및 보도 선형, 폭, 시설물의 위치, 규모, 내부구조, 공용부분(동 현관,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홀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인테리어, 외부색채, 마감재계획 등은 실제 시공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휀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수량이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차량 진출입구 및 주차램프 등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의견 및 제반법규 등을 반영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 차량통행소음, 출차주의 경광등 소음,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출입구 : 단지 남측,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지하2층 진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주차장은 진출입로를 공유함) - 부출입구-1 : 단지 북측,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됨(지하1층 진입) - 부출입구-2 : 단지 서측,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설치됨(지하2층 진입). -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 단지 남측, 공동주택 주출입구와 겸용(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남측 주출입구를 통해 진입하여 201~202동 인근 지하2층에 주차구획 32대 설치됨(공동주택 주차장과 구분) • 201동 하부 지하1층에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됨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내부 및 단지경계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 포함)의 경사도는 시공시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공급시의 명칭과 향후 입주시의 명칭이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지하를 연결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엘리베이터 총 4대, 계단실 4개소)이 설치되어 있음. • 단지 내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옥외계단, 데크옹벽과 인접한 세대에는 시각적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변경 등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 바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경사로 설치, 주민공동시설,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구획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203동~204동 부근 지하에 발전기실 및 전기실, 기계실, 근생펌프실(201동, 202동, 204동) 등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D/A가 노출되어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동 하부 지하층에 제연휀룸 및 동전기실이 계획되어 있고 1층 필로티 하부 및 주동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 매연(냄새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상부 및 인접세대는 통행 동선에 의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면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채광 창의 위치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비상용 포함), 계단실 및 샤프트 등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동 최상층엔 엘리베이터(비상용 포함) 기계실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주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설치 위치, 용량 등 견본주택 설치 단지 모형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2블록 및 3블록의 일조 수인한도 만족률 개선을 위해 단지 내 일부 주동(201, 202, 204, 205, 207동) 옥탑에는 인공채광(ELIOS)이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시 설치 위치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시공 방식에 따라 옥탑 지붕 파라펫의 높이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인공채광(ELIOS)는「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상 최대기간인 내력구조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10년을 적용하며 유지관리의무는 수분양자에게 있음. • 인공채광(ELIOS)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고장 시 공동주택관리비용으로 수리, 유지됨 • 주동 및 지붕층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 패널 등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이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옥상,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임.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마감은 석재마감(필로티 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상위 지침변경,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제작사, 사양, 위치, 크기,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옥외시설물 및 사인물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당사 기준 변경, 본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저층부 석재시공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현관 및 필로티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당사 특화계획과 디자인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동 옥상 및 구조물의 형태, 색채, 입면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일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음. •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주차장은 지하 1~2층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 2층에 위치함.(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구분계획되어 있음)

	• 본 단지의 주택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201과 208동 사이(남측 데크하부 지하2층으로 진입), 202동과 203동 사이(데크하부 지하2층으로 진입) 북측 204동과 205동 사이(지하주차장램프를 통해 지하1층으로 진입) 각 1개소씩 총 3개소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구는 남측 주출입구를 공유하며 인근 저층 세대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램프 진입부분 및 통로의 유효높이는 지하2층 2.7m, 지하1층 2.3m이며, 주차구획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설계되었으나 시공 시 각종 배관설치 등으로 일부구간 유효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시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진입동선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지하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차 충전시설 기기의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요금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과 지하층 E/V홀 및 계단실은 여름철에 대기환경 (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공동주택) : 관리사무소, MDF실, 경비실, 방재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PT실),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독서실, 용역원 휴게실, 맘스스테이션, 기타 휴게공간 등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휀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지하1층에 설치되며, 201동 인근 외부계단실(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며 또한 실 시공 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세부 계획내용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실외기실 및 실외기 설치공간이 구획될 예정이며 통행 시 미관저해,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고 실 시공시 위치나 형태,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및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공간)을 구획하여 설치됨에 따라 통행 간섭 및 소음, 진동,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 구획하여 설치됨에 따라 통행 간섭 및 소음, 진동,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D/A)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주동 소방관련 급기용 D/A 등이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이 인접하는 일부 동 및 세대는 매연, 악취, 해충발생, 급배기 소음, 조망 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시설물의 위치, 수량, 크기, 높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시설물의 경우,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함은 지하2층 주동 출입구 인근에 동별 1개소 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와 동선이 상이할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량은 추후 공사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1층 필로티 및 주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배치 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 VII-0.204g 임.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이 단지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음.

	• 한전 PAD,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 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사인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203동 지붕에 TV 공청 안테나(전파 방향 기준)와 지상 일부 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이동통신 기간 사업자 안테나 및 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상태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소방법 및 방송 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 위치 : 201동, 203동, 205동, 207동 옥상 및 기타 공용부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 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할 수 있음. • 단지 내 특고압 전력 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 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도시가스·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정화조 설치대상 현장으로 정화조 배기루트는 201동과 204동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 시공시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에는 투시용 휀스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통행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놀이터, 중앙녹지광장, 수경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부대 복리시설 천장 내 기계설비 배관 및 덕트, 및 소방배관 등으로 인해 유효 천장고는 낮아질 수 있음. • 부대 복리시설의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 및 지붕에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2블럭: 202동, 204동, 208동 하부)에는 저수조, 저류조, 펌프실 등 기계 관련 실이 위치해 있어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인접한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진동.냄새.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일부에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 입주자 공동시설, 저수조, 빗물처리시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카다로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엘리베이터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각 동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기(최하층)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일부 실에는 공용 또는 타 실을 위한 설비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복도 천장고는 시공시 일부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 내에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정화조 배기팬은 201동, 204동 옥탑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세대에서는 소음.진동.냄새.조망권.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시공성을 위해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난방 및 급탕이 공급될 예정임. • 단지 주변 레벨차에 따라 옹벽(보강토 옹벽, 패널옹벽 등) 등으로 시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중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어린이집, 유아 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저층세대 시야 간섭 및 소음등에 영향이 발생됨. • 단위세대 내/외부 창호 위치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세부 조정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각 종 홍보물에 기입된 종로엠스쿨 관련 내용은 학원개원 2년 이내 영어·수학 과목 한정으로 입주민 직계자녀(초등학생, 중학생) 수에 따라 혜택이 상이하며 "시행위탁사"와 "주식회사 교육다움" 교육특화서비스 계약(2024.01.18.) 체결 기준이며, 추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종로엠스쿨 교육서비스는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2블록 근린생활에 위치할 예정이며,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2, 3블록 입주민들의 전용 교육서비스(교육장소 포함)가 아님.

X 기타사항

■ 지하주차장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이상	지하 1층 : 유효높이 2.3m 이상 지하 2층 : 유효높이 2.3m 이상 (택배차량 이동 구간에 한해 2.7m 이상)	지하 1층 : 2.3m 이상 지하 2층 : 2.7m 이상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 급수펌프 (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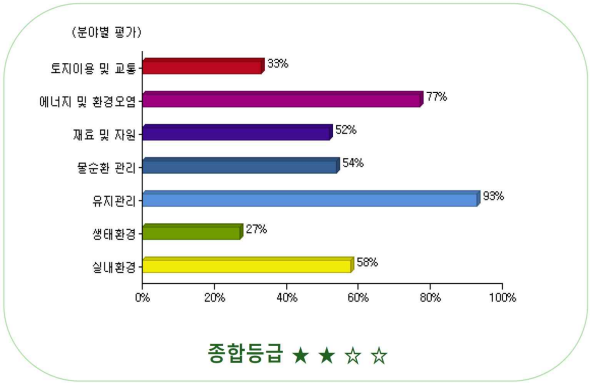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 축 물 명 :	중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신축공사
건 축 주 :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준 공 (예 정) 일 :	2026.09.01.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 131-1번지 일원(중외근린공원)
층 수 :	지하2층, 지상26층
연 면 적 :	144,087.3437㎡ (평가 연면적: 140,685.1923㎡)
건 축 물 용 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 증 번 호 :	G-SEED-P-2023-1257-5
인 증 기 관 :	한 국 부 동 산 원
유 효 기 간 :	2023.11.16.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 등급	
인 증 등 급 :	우량(그린3등급)
인 증 기 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3.03.13.))

위 건축물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2023년 11월 16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중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신축공사
준공연도 :	20260901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 131-1 일원
층 수 :	지하2층 / 지상26층
연면적 :	144087.3437(㎡)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주)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 증 번 호 :	23-주-에-1++-0045
평 가 자 :	박주철
인 증 기 관 :	한국부동산원
운 영 기 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 효 기 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 등급	
인 증 등 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62.6	에너지효율 높음 1+++ 1++ 1+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 낮음	1++	CO_2 배출 적음 48 56 64 72 CO_2 배출 많음	21.2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5.0	49.7	38.2	10.3
급탕	30.7	34.8	25.7	7.1
조명	6.9	5.5	15.2	2.6
환기		2.6	6.8	1.2
합계	62.6	92.5	85.9	21.2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 년 10 월 26 일

한국부동산원장

공동주택성능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중외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동주택(2BL) 신축공사
2. 신 청 자 :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3.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 131-1번지 일원(중외근린공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3.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4. 연계된 녹지축 조성	-
5. 토공사 절토·성토량(깎음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6.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7. 에너지 성능	★★★★
8.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9. 신·재생에너지 이용	★
10.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11.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2.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7. 빗물관리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9. 절수형 기기 사용	★★
20.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접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일조 영향 평가,** 준공 후 실제 일조량과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동	세대수	총일조4시간 이상확보 세대수 (08:00 ~ 16:00)	연속일조2시간 이상확보 세대수	수인한도			
				자연채광(ELIOS 적용 전)		인공채광(ELIOS 적용 후)	
				만족 세대수	만족비율(%)	만족 세대수	만족비율(%)
201	100	100	100	100	100.00%	100	100.00%
202	101	48	70	70	69.31%	70	69.31%
203	100	72	84	84	84.00%	84	84.00%
204	97	45	70	65	67.01%	70	72.16%
205	83	42	79	79	95.18%	79	95.18%
206	102	54	64	58	56.86%	64	62.75%
207	100	41	61	55	55.00%	61	61.00%
208	102	102	102	102	100.00%	102	100.00%
전 체	**785**	**504**	**630**	**613**	**78.09%**	**630**	**80.25%**

■ **소음 측정 결과,** 준공 후 실제 소음도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측정기관	교통소음원(도로) 현황	측정결과
㈜친환경계획그룹청연	서하로, 하서로, 호남고속도로	주간 71dB(A), 야간 65dB(A)

■ **실외소음도 예측결과**

구 분			5층 이하 실외소음도			6층 이상 실외소음도			비고
			최하층	5층	평가	실외	최고층	평가	
201동 1라인	전면	주간	57.2	64.4	기준이내	70.1	24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3.7	60.9		66.7	24층		
201동 1라인	후면	주간	54.1	55.5	기준이내	60.7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0.6	52.1		57.3	26층		
201동 2라인	전면	주간	54.6	62.3	기준이내	70.3	22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1.2	58.9		66.9	23층		
201동 2라인	후면	주간	52.7	52.8	기준이내	57.8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9.3	49.4		54.4	26층		
201동 3라인	전면	주간	50.3	59.1	기준이내	69.8	23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6.8	55.7		66.4	23층		
201동 3라인	후면	주간	50.7	51.3	기준이내	58.0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7.2	47.9		54.6	26층		
201동 4라인	전면	주간	51.0	60.2	기준이내	69.6	24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7.5	56.7		66.2	24층		
201동 4라인	후면	주간	54.9	55.4	기준이내	59.3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1.5	51.9		55.9	26층		
202동 1라인	전면	주간	61.4	63.9	기준이내	65.8	26층	기준이내	
		야간	58.0	60.5		62.4	26층		
202동 1라인	후면	주간	51.9	54.5	기준이내	57.8	26층	기준이내	

		야간	48.5	51.0		54.4	26층		
202동 2라인	전면	주간	60.9	62.2	기준이내	65.5	26층	기준이내	
		야간	57.5	58.8		62.1	26층		
202동 2라인	후면	주간	48.3	49.4	기준이내	55.9	26층	기준이내	
		야간	44.9	45.9		52.5	26층		
202동 3라인	전면	주간	55.1	58.9	기준이내	64.3	26층	기준이내	
		야간	51.7	55.5		60.9	26층		
202동 3라인	후면	주간	47.1	48.2	기준이내	56.2	26층	기준이내	
		야간	43.6	44.8		52.8	26층		
202동 4라인	전면	주간	54.4	58.5	기준이내	64.5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1.0	55.0		61.1	26층		
202동 4라인	후면	주간	52.6	55.5	기준이내	60.9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9.1	52.1		57.5	26층		
203동 1라인	전면	주간	60.0	63.1	기준이내	64.1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6.5	59.6		60.6	26층		
203동 1라인	후면	주간	52.3	55.8	기준이내	56.9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8.8	52.4		53.4	26층		
203동 2라인	전면	주간	59.4	61.5	기준이내	63.7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6.0	58.1		60.2	26층		
203동 2라인	후면	주간	47.6	48.7	기준이내	54.9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4.1	45.3		51.5	26층		
203동 3라인	전면	주간	56.1	57.4	기준이내	61.9	26층	기준이내	
		야간	52.7	54.0		58.4	26층		
203동 3라인	후면	주간	46.3	48.2	기준이내	55.2	26층	기준이내	
		야간	42.9	44.8		51.7	26층		
203동 4라인	전면	주간	54.9	56.1	기준이내	60.9	26층	기준이내	
		야간	51.5	52.7		57.5	26층		
203동 4라인	후면	주간	49.8	51.0	기준이내	54.5	26층	기준이내	
		야간	46.4	47.5		51.1	26층		
204동 1라인	전면	주간	59.0	62.1	기준이내	62.2	24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5.5	58.7		58.7	5층		
204동 1라인	후면	주간	49.3	56.0	기준이내	56.6	7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5.8	52.5		53.2	8층		
204동 2라인	전면	주간	58.2	60.9	기준이내	61.7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4.8	57.4		58.3	26층		
204동 2라인	후면	주간	46.6	52.2	기준이내	55.7	10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3.2	48.7		52.3	10층		
204동 3라인	전면	주간	52.5	53.2	기준이내	57.1	26층	기준이내	
		야간	49.1	49.7		53.6	25층		
204동 3라인	후면	주간	46.6	51.9	기준이내	55.4	10층	기준이내	
		야간	43.2	48.4		52.0	10층		
204동 4라인	전면	주간	51.7	52.8	기준이내	57.5	24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8.2	49.4		54.1	24층		
204동 4라인	후면	주간	49.8	56.0	기준이내	56.8	7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6.4	52.6		53.3	7층		
205동 1라인	전면	주간	51.7	53.0	기준이내	56.7	21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8.2	49.6		53.3	21층		

205동 1라인	후면	주간	52.5	55.5	기준이내	55.5	5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9.0	52.1		52.1	5층		
205동 2라인	전면	주간	52.8	53.9	기준이내	57.2	22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9.3	50.4		53.8	22층		
205동 2라인	후면	주간	52.7	52.6	기준이내	52.6	5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9.2	49.2		49.2	1층		
205동 3라인	전면	주간	53.8	55.5	기준이내	59.0	22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0.3	52.1		55.5	22층		
205동 3라인	후면	주간	52.4	53.0	기준이내	53.0	5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9.0	49.5		49.5	5층		
205동 4라인	전면	주간	55.6	57.0	기준이내	60.2	22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2.2	53.5		56.8	22층		
205동 4라인	후면	주간	54.5	56.2	기준이내	56.2	5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1.0	52.8		52.7	4층		
206동 1라인	전면	주간	53.9	55.5	기준이내	60.4	26층	기준이내	
		야간	50.4	52.1		57.0	26층		
206동 1라인	후면	주간	52.1	53.4	기준이내	56.8	26층	기준이내	
		야간	48.7	49.9		53.3	26층		
206동 2라인	전면	주간	52.9	54.6	기준이내	60.0	26층	기준이내	
		야간	49.5	51.1		56.5	26층		
206동 2라인	후면	주간	47.8	46.1	기준이내	51.5	26층	기준이내	
		야간	44.3	42.6		48.1	26층		
206동 3라인	전면	주간	54.7	57.8	기준이내	60.2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1.3	54.3		56.8	26층		
206동 3라인	후면	주간	47.4	46.4	기준이내	52.6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4.0	42.9		49.2	26층		
206동 4라인	전면	주간	54.7	58.4	기준이내	61.3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1.3	55.0		57.9	26층		
206동 4라인	후면	주간	48.0	49.6	기준이내	54.1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4.6	46.2		50.7	26층		
207동 1라인	전면	주간	55.7	57.0	기준이내	62.1	26층	기준이내	
		야간	52.2	53.5		58.7	26층		
207동 1라인	후면	주간	53.5	54.7	기준이내	58.4	26층	기준이내	
		야간	50.0	51.3		55.0	26층		
207동 2라인	전면	주간	55.5	56.5	기준이내	61.2	26층	기준이내	
		야간	52.1	53.0		57.8	26층		
207동 2라인	후면	주간	44.8	42.5	기준이내	52.3	26층	기준이내	
		야간	41.3	39.0		48.8	26층		
207동 3라인	전면	주간	53.2	58.5	기준이내	61.4	26층	기준이내	1,2층 필로티
		야간	49.8	55.0		58.0	26층		
207동 3라인	후면	주간	45.5	43.5	기준이내	53.1	26층	기준이내	1,2층 필로티
		야간	42.0	40.0		49.7	26층		
207동 4라인	전면	주간	55.0	59.9	기준이내	63.2	26층	기준이내	1,2층 필로티
		야간	51.6	56.4		59.8	26층		
207동 4라인	후면	주간	51.2	51.5	기준이내	56.3	26층	기준이내	1,2층 필로티
		야간	47.8	48.0		52.9	26층		
208동 1라인	전면	주간	55.0	59.6	기준이내	68.3	26층	기준이내	

		야간	51.5	56.2		64.9	26층		
208동 1라인	후면	주간	54.8	56.3	기준이내	62.2	26층	기준이내	
		야간	51.3	52.8		58.8	26층		
208동 2라인	전면	주간	54.8	60.0	기준이내	68.9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51.3	56.6		65.5	26층		
208동 2라인	후면	주간	48.7	49.1	기준이내	54.3	26층	기준이내	1층 필로티
		야간	45.3	45.6		50.8	26층		
208동 3라인	전면	주간	50.3	58.6	기준이내	68.2	26층	기준이내	
		야간	46.8	55.2		64.8	26층		
208동 3라인	후면	주간	47.3	48.0	기준이내	55.1	26층	기준이내	
		야간	43.9	44.5		51.6	26층		
208동 4라인	전면	주간	50.9	59.2	기준이내	67.9	25층	기준이내	
		야간	47.4	55.7		64.5	25층		
208동 4라인	후면	주간	50.0	53.1	기준이내	57.1	25층	기준이내	
		야간	46.5	49.7		53.6	25층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일금 삼천팔백구억삼백육십만원정 ₩ 380,903,600,000원	제01282024-101-00009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당사가 본 아파트 "힐스테이트 중외공원"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 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분양목적물은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겸 시행자인 광주중외공원개발(주), 수탁자 ㈜한국토지신탁,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및 범양건영(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매수인(수분양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자인 광주중외공원개발(주)가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광주중외공원개발(주)이고, ㈜한국토지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은 일절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및 범양건영(주)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은 위탁자 광주중외공원개발(주)에게 있습니다.
-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은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현금)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중외공원개발(주)이 부담합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광주중외공원개발(주) 및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공급되는 물건으로 본 공급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인 광주중외공원개발(주) 및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 및 범양건영(주)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한국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수분양자)은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및 범양건영(주)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 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매수인(수분양자)에게 본 공급물건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 겸 수익자 광주주외공원개발(주)와 수탁자 ㈜한국토지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신탁목적 달성,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해제(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매도인)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중외공원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본 공급계약의 매수인(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 겸 수익자인 광주중외공원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수탁자(㈜한국토지신탁)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사업정산 또는 신탁 종료 후 택지가 준공되는 경우 본 건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여하한의 경우에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책임은 위탁자 광주중외공원개발(주)에게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원/VAT포함)

구 분	공원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강남기술공사	㈜백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한컨설탄트	㈜피씨엠글로벌기술사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VAT포함)	₩143,514,000	₩3,256,941,600	₩565,612,630	₩789,519,694	₩330,000,000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이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원시설의 경우 우선 시공분에 대한 부분발주 사항으로 향후 신규 감리사 선정 및 감리금액 추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한국토지신탁	광주중외공원개발(주)	현대엔지니어링㈜	범양건영(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코레이트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26-14, 2층 (치평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4, 105동 비102호, 비104호(초량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258220	200111-0582077	110111-2153015	110111-0015861

■ 사이버 견본주택 :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홈페이지(http://www.hillstate-park.com)
■ 견본주택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67
■ 분양문의 ☎ 1533-5006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